「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미시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5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 종 우

2. 제안이유

가. 현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대통령 유품 및 대통령 관련 자료 7,866점 중 477점을 전시하고 수장고 480㎡에 7,389점을 보관 중으로, 금속·지류 등 보존 환경이 상이한 유품의 혼합 수장과 자료 과포화로 안전한 자료 관리를 위한 수장공간 확보가 필요함

나. 재질별 수장고를 포함한 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으로 대통령 유품의 안전한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 콘텐츠를 확대하여 대통령 유품 및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취득재산】

○ 위　　치 : 구미시 상모동 156-1번지 일원(현 역사자료관 일원)

○ 대　　상 : 건물 1개동 연면적 2,830㎡(지상 3층)

○ 기준가격 : 195억원

○ 사 업 비 : 195억원(도 93억원, 시 102억원)

○ 사업기간 : 2027. ~ 2030.

○ 주요시설 : 재질별 수장고, 보존복원실, 기획전시실 등

○ 추진현황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5. 12. ~ '26. 2.
-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협의 : '26. 2.
- 道,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 '26. 3. ~ 4.
- 道, 전환사업비 신청 : '26. 8.
- 道, 재정투자심사 통과 : '26. 9.

○ 향후추진계획

- 건축설계 및 유품연구 용역 : '27. 1. ~ 12.
- 건축공사 및 전시설계, 개관 : '28. ~ '30.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건	2,830	19,5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2,830	19,500

취득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구분	재산의표시			추정가액	취득매각시기	사 유	재산소유자	비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					
총계			**2,830**	**19,500**				
취득	건물	상모동 156-1	2,830	19,500	2030년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	구미시	

위 치 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제2관
예정지
박정희대통
령
박정희대통
령 생가


제2관
예정지
박정희
대통령
동상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관리계획안은

- 현재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 유품 및 근현대사 자료를 재질별로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전시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역사자료관 제2관을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현재 역사자료관은 총 7,866점의 대통령 유품 및 근현대사 자료 중 477점만 전시하고 7,389점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만큼, 재질별 수장고와 보존복원실, 기획전시실 등을 갖춘 제2관을 증축하여 유품의 전문적인 보존·관리와 전시 콘텐츠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총사업비가 195억원에 달하고 이 중 시비가 101억 7천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만큼, 향후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면밀히 관리하고, 국·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2026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으로 이관된 만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업무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 추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없 음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수장고 부족 해소를 위한 기존 시설 활용 및 순환전시 등 대안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추가 전시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증축에 따른 예산 투입의 효율성 및 향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관람객 현황과 전시실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증축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함.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